

1. **범위:** 본 판매약관은 판매자의 모든 판매에 적용되며, 모든 구매 주문에 있어 구매자는 본 판매약관을 반드시 수락하는 것으로 한다.
2. **청약:** 판매자의 판매 청약은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구속력이 없으며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다. 구매자가 판매 청약을 수정하는 것은 판매자가 문서로 명시적으로 수락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구매자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판매자가 문서로 수락한 구매 주문을 구매자가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대리인에게 통지한 구매자의 발주서는 판매자가 문서로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발주서의 수령을 인정하는 것은 발주서의 수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가격 및 지급:** 여기에 명시된 가격 및 조건은 판매자가 그러한 가격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최소 7일 내에 발한 문서상 통지로 언제라도 조정할 수 있다. 구매자가 가격 인상에 대하여 위의 효력 발생일 전에 문서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판매자에게 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그러한 가격 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매자가 가격 조정을 반대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조정된 가격에 대해 문서로 합의할 때까지 또는 판매자가 기존의 판매 가격을 다시 유지할 것에 문서로 동의할 때까지 판매자는 차후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정된 가격은 판매자가 차후에 다시 조정하지 않는 한 여기에 명시된 효력 발생일로부터 그에 따라 발송된 모든 제품에 대해 지급되어야 한다. 청구서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구매자가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의 발송을 중지하거나 또는 구매자의 과실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연체대금 수수료는 최고의 통지를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다른 손해를 해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 다음날로부터 또는 청구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 만료일로부터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기한을 넘은 지급에 대하여는 지급 기한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판매자의 내부정책에 따른 이자를 부과한다.
4. **신용 한도 및 지급 능력:** 판매자가 정한 신용 조건은 구매자의 재정 상태에 근거하여 판매자 단독 재량으로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다. 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구매자의 재정적 지불 능력이 언제라도 악화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판매자의 다른 구제책 외에 추가로, 발송 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또는 만족스러운 담보 수령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차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 **배송:** 제품은 문서로 된 주문 확인서에서 배송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배송되어야 한다. 배송을 위해 정한 시간 또는 날짜는 배송 예상 시간 또는 날짜이므로, 판매자는 지정된 시간 또는 날짜에 배송되지 않은 과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판매자 측의 그러한 과실은 계약 위반 또는 계약 조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구매자는 판매를 취소하거나 제품을 거절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제품의 연착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문서로 특별히 합의한 바가 없으면, 제품 손상의 위험은 제품의 인도와 함께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한다. 화물차나 탱크차로 이동하는 대용량 배송 제품의 무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 목록을 분실한 잘못이 있더라도 숙련된 검량관이 보증하는 송하인의 하중을 인정하도록 한다.
6. **수출:** 본 판매약관은 수출의 경우에 적용되며 INCOTERMS 2010 또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발표한 그 이후의 버전에서 정한 조건과 함께 적용된다.
7. **개별 거래:** 각각의 선적마다 개별적이고 독립된 거래를 구성하며 판매자는 다른 선적 내용과 관계 없이 각 선적에 대한 청구서 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 구매자가 여기에서 정한 조건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에 대한 다른 법적 구제책과 더불어 판매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채무불이행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추후의 선적을 연기하거나 또는 추후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8. **보증:** 구매자 측에서 생각하는 용도에 맞게 제공된 제품의 적합성 결정은 구매자 단독의 책임으로 한다. 판매자는 이에 따라 배송되는 제품이 제조일자에 판매자의 사양에 적합하다는 점을 보증한다. 판매자는 그 밖의 명시적 보증을 하지 않으며, 특정 목적에 대한 상업성 또는 적합성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손실, 손상, 상해에 대해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고, 여기에는 (i) 제조 과정 중에 있거나 다른 물질과 결합된 제품의 사용 중에 발생하거나 또는 (ii) 제품의 취급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공해, 환경 파괴 및 환경 복구에 대한 책임을 제한 없이 포함한다.
9. **책임:**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그리고 클레임의 성격과 상관 없이, 판매자의 계약상 그리고 계약 외적인 책임은 판매자의 단독 재량으로 하자 있는 제품의 가격 상환 또는 제품의 교환으로 제한된다. 하자 있는 제품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사양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합의한 사양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배송일 또는 배송을 위해 정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클레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구매자가 그러한 제품에 대한 모든 클레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판매자는 소송의 형태와 근거에 상관 없이 구매자의 제작 비용, 일실 이익 또는 영업권 등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특별, 간접적, 결과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10. **소유권의 이전:** 제품의 위험은 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제품의 소유권은 양 당사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제품과 모든 추가 부채와 비용에 대한 대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까지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제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할 때까지 구매자는 판매자의 수치인으로서 제품을 점유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구매자는 구매자의 사업을 위한 일반적 목적에 따라 제품을 혼합하고 사용할 수 있다. 판매자가 제품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매자로부터 제품의 점유를 취할 권리가 있다.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이자와 함께 제품에 대해 구매자에게 판매에 상응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1. **컨테이너의 반환:** 배송에 사용된 모든 반환 가능한 컨테이너는 판매자의 소유로 하며 원래 배송된 판매자의 제품의 적절한 보관 상태를 위해서만 구매자가 사용하도록 한다. 구매자는 선적 시에 청구서에서 정한 판매자의 현재 보증금액과 동일하게 컨테이너의 반환을 위한 보증금을 부담한다. 이러한 보증금은 제품에 대한 청구서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할인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구매자는 원래의 선적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판매자의 선적 지점에 컨테이너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된다. 구매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양호한 상태로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다른 법적 구제조치 외에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12. **세금:** 구매자는 판매자가 판매된 제품의 판매, 생산, 운송, 사용에 따라 정부 기관(국가, 주, 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세금, 세금 증가분, 새로운 세금, 소비세, 그 밖의 요금 등을 상환해야 한다. 판매자가 운송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판매된 제품의 가격에 구매자에 대한 선적을 위한 운송 비용 증가액을 추가할 수 있다.

13. **불가항력:** 불가항력의 경우 그리고 제조나 발송을 저해 또는 연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판매자는 적절하게 이행을 종료, 축소, 정지할 수 있고 구매자는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 “불가항력”과 “상황”이라는 용어는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원인, 사건,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쟁, 동원, 파업 또는 직장 폐쇄, 폭동, 노동 쟁의, 기계 고장, 직장 폐쇄, 폭발, 화재, 자연 재해, 홍수, 교통 수단의 제한 또는 차단, 원료 또는 전원 조달의 어려움, 공공 기관의 개입 등을 포함하고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가항력과 상황이 10 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4. **전부 합의:** 여기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판매자와 구매자는 주제와 관련하여 본 일반판매조건 전부에 합의하는 것으로 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밖의 어떤 종류의 다른 양해나 보증을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지 않은 수정 사항은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15. **양도:** 본 판매약관은 구속력이 있으며 각 당사자의 승계인과 양수인의 이익을 위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구매자는 판매자가 미리 문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16. **권리의 포기:** 본 일반판매조건 하에서는 판매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리의 포기도 유효하지 않고, 본 판매약관의 어떠한 권리의 포기도 차후에 그러한 권리 또는 이에 따른 그 밖의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판매약관의 위반에 의한 권리집행의 포기는 본 판매약관의 추후 위반에 의한 권리 포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17. **법률/관할:**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한 바가 없으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본 판매약관에 따른 모든 판매는 판매자의 등록/본사 사무실이 있는 판매자의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법률, 규칙, 원칙 등과 상충하지 않고 판매자의 등록된 주된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해석한다. 본 판매약관 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판매자의 등록/본사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관할법원에서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18. **분리가능성:** 본 판매약관의 어떠한 규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규정들은 계속해서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한 경우에 양 당사자는 가능한한 신의성실하게 무효 및/또는 집행불가능한 규정을 해당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법률적 및 경제적으로 가장 근접한 유효 규정으로 대체한다.